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여시 증여 전후 6개월내 매매 사실이 있으면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6644, 2022.03.28

▮질 의

- 민원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증여할 예 정임
-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일부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정확한 가액은 확인할 수 없음

질의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은 어느 가액인지
- (I안) 증여일 전 6개월 동안 비상장주식 거래사이 트에서 발생한 거래가액 중 가장 최근의 거래가 액
- (2안)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에 따른 평가액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한

-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금액 은 제외하는 것이며.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 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 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1714, 2022.05.20

▮질 의

• 복식부기의무자인 인적용역사업자가 해당 과세기 간 중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의 이행기간을 도과한 상 태에서 신규등록한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 좌를 신고한 경우, 쟁점조항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 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6에 따른 감면적용이 배 제되는지 여부

▮회 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

2022 · 12 · 07 www.eAnSe.com 13

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 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 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

사전법규재산-615, 2022,05,24

▮질 의

•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합병, 포괄적 주식이전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 공적자금회수를위하여 해당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2022.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2022.05.19.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예금자보호법」제2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 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이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공사가 정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하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

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공 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 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58, 2022.04.12

▮질 의

- 13.7월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 원이 '22.3월 행사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법률 제18634호, 2021.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
 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 §16의4에 따른 과세특
 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3.7월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같은 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